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 2019-9호

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

「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」 제47조의2(지방세 징수의 준용)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건　　명 :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

2. 법적근거 :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2

지방세기본법 제33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
3. 체납 및 압류대상

수용가 현황			체납기간 (월)	체납금액 (원)	압류자 및 압류대상		
고객번호	주소	성명			소재지	성명	압류물건
1992001746	대구 북구 학정로 9 (태전동 687-47)	㈜애플인터 내셔날	2018.5~ 2019.3	270,580	대구 북구 학정로 9 (태전동 687-47)	㈜애플인터 내셔날	대구 북구 학정로 9 (태전동 687-47) 토지

4. 공고기간 : 2019. 6. 20 ~ 7. 4 (15일간)

5. 안내사항

○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을 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○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미납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.

6. 의견제출 기관 :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요금팀
(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218, ☎ 053-670-3325)

7. 의견제출 기한 : 2019. 7. 4.(목)까지

2019. 6. 20.

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